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6891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5. 22 선고 2001나7076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689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9 선고 99나323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AA외 6인)

【피고, 상고인】 신B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A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9. 선고 99나323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5.경 피고와 사이에 CACA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들에 대한 협동조합자금의 대출에 따른 대출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업무를 포함하여 일정 범위의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신BA기금 업무위탁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부산광역시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6. 8. 5.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 2,4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협동조합자금을 대출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8. 27.경 원고와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신과목은 협동조합자금 대출, 여신한도는 금 2,430,000,000원, 거래기간은 1997. 8. 27.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김DA 및 이사들인 소외 김DB, 이DC, 이DD, 김DE, 조DF 등 소외 조합의 이사 전원은 위 이사회 기재결의에 따라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위 대출약정 체결 당일 원고는 위 업무위탁계약에 기한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소외 조합과 사이에 소외 조합이 위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는 금 2,430,000,000원, 보증기간은 1996. 8. 27.부터 1997. 8. 27.까지로 정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1996. 10. 5.경부터 1997. 3. 27.경까지 사이에 소외 조합에게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금 2,411,98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각 대출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대출금 중 금 2,411,8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조합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오다가 1997. 5. 3.경에

이러러 부도가 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즉시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9. 3.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조합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보증책임은 신BA기금업무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 제8조 제3항 및 보증위탁계약위반 면책기준(이하 '면책기준'이라고 한다) 제6조의 1 나.항의 규정에 따라 전부 면책되거나 적어도 일부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위탁계약서 제8조와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및 위탁보증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 각 부속된 CACA조합용 신용보증간이심사기준표 및 신용보증심사기준표(이하 '심사기준표'라고 한다) 하단의 유의사항 제2조 가.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조합으로부터 그가 발행하고 구매물량을 배정받은 수혜조합원(이하 '수혜조합원'이라고 한다)들이 배서한 어음들을 징구하여야 하고, 위 어음들은 신용보증규정 제14조 및 위 심사요령 제13조 소정의 '중요 채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채무관계자'에 해당하는 수혜조합원들의 배서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배서 부분이 위조된 어음들을 징구한 후 소외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피고의 수혜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면책기준 제6조의 1 나.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간이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의 위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소외 조합이 발행하고 수혜조합원들이 배서한

어음들을 징구하여야 하지만, 그 배서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신용보증규정 제14조 및 심사요령 제13조는 신용보증약정서, 어음, 기타 중요 서류상의 기명날인은 ‘채무관계자’의 서명날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신용보증규정 제17조 및 심사요령 제16조는 채무관계자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및 그 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음상의 배서인은 채무관계자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바, 원고가 위 심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조합의 이사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수혜조합원들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는 약속어음들을 징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심사기준표상의 상환계획 항목과 채권보전 항목을 모두 충족시킨 것이고,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별도로 반드시 채무관계자도 아닌 수혜조합원들의 배서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수혜조합원들의 배서부분이 과연 위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피고가 위 각 어음상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우편질문을 통하여 단순히 그 진위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배서부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각 증거들만으로 곧바로 수혜조합원들의 배서부분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가사 수혜조합원들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이른바 ‘단체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그 계약의 수혜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미치는 것이어서 수혜조합원들이 그에 기한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수혜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어음상 수혜조합원들의 배서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피고의 수혜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4) 또한 위 면책기준 제6조의 1 나.항은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심사기준표상의 심사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하는 경우에 당연히 피고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되는 것임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심사기준표상의 심사항목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한 결과 그 심사기준표상 피고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한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되는 것임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령 원고가 위 심사기준표 하단의 유의사항 제2조 가.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조합으로부터 수혜조합원들이 배서한 어음들을 징구하면서 위 배서부분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배서부분들이 위조된 어음들을 징구함으로써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 취급에 피고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대법원의 판단

가.수혜조합원의 기명날인에 대한 확인의무의 점

기록에 의하면 위탁계약서는 제8조에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1항), 신BA기금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피고가 정하는 업무방법서, 제규정, 자동신용보증취급요령, 기타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과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용요령 및 심사요령에 부속된 CACA조합용 심사기준표는 유의사항 제2조의 가.항에서 CACA조합의 공동구매사업용 자금차용채무를 위한 신용보증을 할 때에는 상환계획 심사항목으로 위 조합이 발행하여 수혜조합원이 배서한 어음 등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수혜조합원이 배서한 어음을 징구하도록 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진정한 배서를 받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지, 형식상 배서의 기재만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심사기준에서 수해조합원들이 배서한 어음을 징구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로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출연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할 수해조합원들로 하여금 차용금 상당액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취득하게 될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신용보증규정 제17조와 심사요령 제16조의 규정도 채무관계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채무관계자의 범위를 그와 같이 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규정 및 심사요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배서하는 수해조합원 역시 본인의 서명날인임을 확인하도록 한 채무관계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직원의 면전에서 본인이 기명날인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받는 등으로 수해조합원들의 위 각 어음상 배서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에게 그 배서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 및 심사기준표상 수탁자의 확인의무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면책사유 해당 여부

(1)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수해조합원들의 위 각 어음상 배서부분이 본인의 서명날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각 어음상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들 중 소외 조합 이사장인 김DA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피고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최고받고서 자신들은 위 각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DA이 그들의 승낙도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기명, 날인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으며(을 제22호증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고EA조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제9 내지 21호증)상의 배서인들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 그 상당 부분이 동일인에 의하여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는데다가,

액면금이 1억 8,000만원을 넘는 고액 약속어음의 배서에 날인된 인영의 대부분이 쉽게 조각하여 단순한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소위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어음상 배서부분 모두가 과연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많은바, 그렇다면 이제 위 각 어음을 교부받은 자로서 배서의 진정여부를 더 쉽게 밝힐 수 있는 원고측에서 이사장인 김DA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으로 배서가 진정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토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심리를 더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각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예비적으로 가사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이 ‘단체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므로 피고는 수혜조합원들에 대하여 배서위조와 상관없이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피고의 수혜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앞서 소외 조합이 이사회 의사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위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적 계약은 그 결의 외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할 것 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 단체적 계약임이 명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기 전에는 이를 곧바로 단체적 계약이라고 속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단체적 계약이어서 피고가 수혜조합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어음상 배서가 위조되었다면 스스로 수혜조합원을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만큼, 달리 수혜조합원을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또한 원심은 가사 원고가 위 각 배서부분이 위조된 어음을 징구하여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책임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부’ 면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는 ‘일부’ 면책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어음상 배서부분이 일부라도

위조되어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나아가 그에 따른 일부 면책의 가부와 범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